



|   |                |  |  |
|---|----------------|--|--|
|  국토교통부 | <b>보 도 자 료</b> |  |  경제의 틀을 바꾸면<br>미래가 달라집니다. |
|   | 배포일시           | 2016. 12. 26.(월)<br>총2매(본문2매)  |  |
| 담당<br>부서  | 부동산산업과         | 담당자  | • 과장 김상석, 사무관 정승수, 주무관 전성환<br>• ☎ (044) 201-3411, 3414, 3419   |
| 보 도 일 시   |                | 2016년 12월 2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7.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 |  |

## 부동산 리츠·펀드 경영 가능...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

### 「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」 공포시행...리츠 운용사, 임대관리업도 가능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리츠(REITs, 부동산 투자 신탁) 자산관리 회사의 업역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「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27일(화)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.

○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리츠를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.

□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①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(부동산집합투자업) 간 경영을 허용하였다.

- 작년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% 투자할 수 있도록 「자본시장법」이 개정\*되어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·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

\* 종전 부동산펀드(회사형)는 자산의 70%까지만 부동산에 투자 가능

-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.

②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하나,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,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□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·시행될 예정이며,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정승수 사무관, 전성환 주무관(☎ 044-201-3419)에게  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